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최 현 대*

차 례

- I. 서론
- II. 빛공해의 의의와 법적보장의 태양
- III. 빛공해 분쟁에서의 민사법적 구제법리
- IV. 결 론

[국문초록]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법적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들은 어찌면 발전하고 있는 사회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일련의 권리들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등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덜하겠지만, 그와 같은 권리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른바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에 의한 '빛공해'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있지만, 그들에게 과연 빛공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된다. 외국의 경우 '빛공해'에 관한 대책을 1970년대 이후부터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 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과연 민사법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빛공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민사

* 관동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적인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법리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특히 '빛공해' 자체의 민사구제법리들에 대해서는 선행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소음공해나 진동에 의한 침해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침해 태양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침해소송들에서의 논의들을 적용·검토해보므로써, 향후 '빛공해'와 관련한 민사분쟁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서론

인공조명에 의한 '빛'은 인간에게 활동영역 및 활동시간의 연장을 이루어주었다.¹⁾ 하지만 지나친 '빛'의 방사로 인해 '빛'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가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슈화되었고,²⁾ 그간 크게 인식되지 않고 있던 이른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문제'를 환경침해³⁾의 한 유형으로써 인식·접근하고 있다.⁴⁾ 물론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국민건강 및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인공조명에 대한 대

- 1) 19세기 후반의 토마스 에디슨을 위시한 과학자들에 의한 전구의 발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Ploetz, Kristen M., "Light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the Inadequacies of the Common Law and State and Local Regulation", 36 *New Eng. L. Rev.* 985 (2001-2002), p. 985).
- 2) 최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에서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의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2010. 11. 16)에 의하면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답한 시민이 전체 응답자 중 64.1%였고, 야간 인공조명이 과도하게 밝아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시민이 전체 응답자 중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경우, 명동, 대학로, 강남 등 번화가에서는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63%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 3) 환경침해의 개념 및 특질과 관련해서는, 김상천, "환경침해의 유지청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0. 6), 한국재산법학회, 391-393면. 아울러 환경침해라는 용어 이외에도 환경손해, 환경피해, 환경훼손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환경손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누고 있는 문헌으로, 윤효영, "환경손해의 개념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한림법학 FORUM* 제20권(2009. 12),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78-179면.
- 4) 이와 관련된 기사로 경향신문 2012. 5. 17일자 기사에서는 "빛공해에 사람도 식물도 괴롭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62059005&code=940701[최후방문일: 2012. 3. 31]) 라고 하고 있어, 빛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⁵⁾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국가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11261호 신규제정 2012. 02. 01 : 이하 ‘빛공해 방지법’이라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⁶⁾ ‘빛공해 방지법’을 통해 ‘빛공해’의 개념이 새롭게 인식될 것임은 분명하고, 아울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근거법률로서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분쟁조정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빛공해 방지법의 경우 정부의 생활공간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공법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법률로서, 국가와 사인 및 사인과 사인간의 법적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계의 조명,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가로등,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이 상당수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법익으로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개념을 정의해보고, 분쟁 발생시 법적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민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관한 법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5) 특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관련하여 미국은 주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리조나주를 포함한 7여개 주에서 빛공해 관련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2005년 「Clean Neighbo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에 인공조명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호주나 스페인의 경우에도 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성에서 1994년 2월 환경기본계획에서 빛공해 문제를 처음 언급한 이래, 1998년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12, 28-32면 및 125면 이하 참조).

6) 국회에서 이 법률을 제정할 당시의 제정이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근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림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을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친체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II. 빛공해의 개념과 법적보장의 태양

1. 빛공해의 의의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그리고 일반적으로 빛공해라 함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지역까지 조명 효과가 침투하는 장해광 혹은 빛의 침입(light trespass),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돼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눈부심(glare), 과도 조명(over-illumination), 한 장소에 과도하게 많은 조명이 현란하게 사용돼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빛 혼란(light clutter), 도시 위 밤하늘이 밝게 보이는 밤하늘의 영향(sky glow) 등⁸⁾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빛공해는 다른 일반적인 공해와는 달리 쉽게 이를 차단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웃 담장 너머를 비추는 경우와 같은 장해광(light trespass)은 원하지 않는 빛이 누군가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야경의 조망을 방해하지만, 두꺼운 차광막 등의 설치를 하거나 시간대별로 조도 조정

7) 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빛공해에 대해서 국제적인 유관기관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1) IDA : 국제다크스카이협회 (The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IDA)에서는 빛공해를 “스카이글로우(sky glow), 글레어(glare), 침입광(light trespass), 라이트클러터(light clutter)를 포함한 인공조명의 역효과로 인하여 야간의 가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상”, 2) CIE : 국제조명위원회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Éclairage: CIE)에서는 “인공조명의 역효과를 일으키는 요소들의 총칭”, 3) ILE : 영국조명기술자협회(The Institution of Lighting Engineers: ILE)에서는 장해광(obtrusive light)을 빛공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심각한 심리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거나 야간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빛으로써, 이 빛은 공해의 한 형태이며 실질적으로 작업조명에 아무 손상 없이 감소시킬 수 있는 빛이다”, 4) IESNA : 북미조명공학회(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 IESNA)에서는 “빛공해란 하늘로 직접적으로 향하거나 혹은 표면에 반사되는 빛으로 인하여 천문관측이나 야간의 하늘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빛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주 5), 2-3면.

8) Kohei Narisada/Duco Schreuder, *Light Pollution Handbook*, Springer, 2004, pp. 61-78.

을 낮추게 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를 방지 내지 차단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차광막 설치라는 방지행위를 유발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비용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 빛공해로 인한 침해의 유형은 아직 모두가 정형화되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침해 모습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조치로 쉽게 대응할 수는 없다. 어쨌든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환경기본법과는 별개로 일정한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빛의 침해로부터 보호 내지 구제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⁹⁾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빛공해로 인한 침해의 유형

빛공해의 원인이 되는 인공조명시설·기구에 의한 빛은 가정과 사회, 공장, 가로 등, 스포츠 구장의 조명, 간판이나 네온사인 등 곳곳에서 나온다.¹⁰⁾ 하지만 이러한 빛이 항상 공해배출의 원인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방지한다든지, 통행, 보행, 교통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확보한다든지, 사람들의 활동·작업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높인다는 등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한다.¹¹⁾ 하지만 빛공해의 영향은 1차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 직접적인 손해가 그 즉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도, 2차적으로 빛에 노출되는 대상에 따라 과도하고 계속·반복적인 빛에 의한 노출이 이루어질 경우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빛에 의한 공해의 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민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침해의 모습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빛공해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빛은 인간이나 짐승, 곤충 등의 행동에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이들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예를 들어 수면장애,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한 질병 유발, 시력저하 등으로 인한 손해가 생

9)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치를 마련해놓고 그에 따른 기준치 초과상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공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 환경법집행상의 어려움이나 해석의 곤란함 등을 털어 빠른 행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Buchholz, Georg, *Integrative Grenzwerte im Umweltrecht*, Berlin, 2001, S. 13 ff).

10) Kohei Narisada/Duco Schreuder, *op. cit.*, pp. 37-60에서는 빛방사의 종류를 야외조명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1) 환경부(주 5), 7면.

길 수 있다. 그리고 수목이나 농작물 등의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나친 빛의 방사에 노출될 경우 식물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생태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어 있다.¹²⁾ 그 밖에 일반적으로는 천문가의 천체관측과 사진촬영 등이 방해되거나 과잉의 조명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등도 국제적으로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3. 우리나라 빛공해 문제 해결에 관한 법적근거

(1) 헌법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써 천명함으로써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경권을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들어 빛공해에 의한 침해구제를 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른바 ‘도룡농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한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환경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이러한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단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입장”¹³⁾이라고 하여 헌법상의 환경권이 사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위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한 빛공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12) 환경부(주 5), 12면.

1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1149(병합) 결정.

(2) 민법

학계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침해¹⁴⁾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주로 공법적 구제를 중심으로만 두던 모습에서 점점 민사법적 구제를 통한 접근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침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관련규정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유지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적청구권과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것이다.

(가) 물권적청구권 및 임의로운 금지규정에 의한 책임

우리 민법은 제205조 및 제206조에서 점유권을 근원으로, 제214조에서 소유권을 근원으로 하는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로운(Immission) 금지규정인 제217조(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물론 환경오염 피해를 상린관계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는 제217조 규정에 따르면, 특히 환경오염현상의 제한과 더불어 주체가 토지소유자로 제한되고 있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는 있다.¹⁵⁾ 어쨌든 제217조의 ‘기타 유사한 것’의 범위를 ‘토지이용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발생하는 간섭 또는 생활방해’로 본다면, 생활방해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고, ‘빛공해’로

14) 환경침해(Umwelteinwirkung)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용어로 규정된 바는 없다. 이 개념은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제3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판례에서는 공해나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공1997. 9. 15. (42), 2636] 등에서 환경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5) 박운길, “유지청구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12권(1997. 1), 한국토지법학회, 203면.

인한 간접 또한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다.¹⁶⁾

(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가장 먼저 민법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는 제750조를 들 수 있다.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750조 규정에 따르면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¹⁷⁾ 하지만 빛공해로 인한 침해 구제를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이론 구성을 하려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인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조명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사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들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조명의 설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¹⁸⁾

(3) 기타의 법률

인공조명시설·기구에 의한 빛공해 관련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임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

16)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340면.

17) 지원택, 「민법강의」, 홍문사, 2011, 1667면.

18) 만일 인공조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책임으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민법 제758조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상의 차이는 해당 인공조명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구재균, “교통소음과 법적 대응”,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2010. 4), 한국환경법학회, 152면).

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빛공해는 생활환경의 환경오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식물의 경우에는 제3조 제4호에서 오염원인자의 범위 제한이 있어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동조 제5호에서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적용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조명시설·기구로 인한 빛공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로법」, 「경관법」, 「항공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안전부 소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도 빛으로 인한 일정한 침해 내지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에는 공법상의 규제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III. 빛공해 분쟁에서의 민사법적 구제법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민사분쟁화 된 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례를 예로 들어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분쟁 발생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호수단으로 적용가능 한 법리들에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빛공해로부터의 보호 수단

현실적으로 환경관련 분쟁에서 민사법적 구제 논의는 공법에서의 그것보다 환경보호 목적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사법적 구제의 목적은 결코 환경보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환경침해로 인한 개인적 권리 내지 이익의 보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빛공

해로 인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있을 경우, 민사법적 구제책은 침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환경보호 자체로는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한편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 작용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크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결국 환경보호를 위한 민사법적 대응은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침해결과에 대한 사후적 손해배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¹⁹⁾ 즉 민사법적 구제수단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²⁰⁾ 내지 부작위청구가 사전적인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면, 환경침해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사후적 구제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빛공해로부터의 사법상의 구제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법 외에도 최소한의 관련규정들 모두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빛공해의 분쟁사례가 발표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논의조차도 없기 때문에 모든 적용가능성을 열어 놓고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환경침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적용대상 규정이 한정적이므로 차이점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사전적 구제로써 유지청구를, 사후적 구제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나누어서 살펴보되, 이들 구제수단 고찰에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요건들을 먼저 언급한 다음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2. 민사책임법리 검토를 위한 기본논의

이하에서는 빛공해로 인한 민사책임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단, 여러 요건들 중 '손해의 발생'과 관련한 적극적·소극적 손해 등에 대한 논의나 '인과관계'와 관련해 문제되는 개연성이론이나 상당인과관계 등

19) 윤효영(주 3), 183면.

20) 유지청구는 중지청구, 금지청구, 정지청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어청구권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한 견해로, 진경운,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근거와 인용의무 등", 민사법학 제42호(2008. 9), 한국민사법학회, 413-414면.

21) 김형선,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2011. 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6면.

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주로 침해유형 및 책임성립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침해행위의 존재(인정가능한 침해행위의 유형)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로 인해 빛공해의 원인이 되는 빛은 가정과 사회, 공장, 가로 등, 스포츠 구장의 조명, 네온사인 등 곳곳에서 나온다.²²⁾ 빛공해의 침해태양의 특수성은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것보다는 오히려 소극적 침해 또는 조명시설·기구의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유형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사용자에 대한 빛의 지속적이고도 과도한 방사로 인한 수면방해 및 일상생활의 지장 초래,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식목이나 작물의 성장에 대한 손해,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등의 도로이용자에 대한 직·간접 피해 등으로 인한 것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빛공해의 원인으로부터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2) 당사자

위 (1)의 침해에 따라 인공조명시설이나 기구로 인한 빛공해로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받은 자 또는 토지사용 자체를 방해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에 처해 있는 자가 청구권자가 될 것이다.²³⁾ 구체적으로는 금전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로는 소유 부동산 가치의 하락, 소유 동·식물에 대한 피해, 차광시설 설치 비용 등이 발생한 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는 수면방해, 강박관념, 스트레

22) 환경부(주 5), 12-20면 참조.

23) 참고적으로, 판례는 일조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불법점유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성을 부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8가합8152 판결), 정당한 근원에 의한 점유자인 실 거주자는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다(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편, 「2011 환경소송의 쟁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40면)

스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자들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인공조명 때문에 창문을 개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특히 유지청구와 관련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²⁴⁾ 그리고 특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공작물 등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빛공해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손해를 야기한 인공조명시설·기구와 같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가 된다.

(3) 책임성립요건의 구성

(가)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근거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에서 과연 인공조명시설·기구의 설치자나 관리자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침해 유형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시설로부터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공해의 일종이라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소음공해 관련 판결들을 그 근거로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기존 소음공해 관련 판례들에서 공해로 인한 침해의 성립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의, 과실의 문제는 결국 유지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판단 시, 그 기준으로 통상의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함께 해결함으로써 따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²⁵⁾ 다만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의 경우, 고의는 문제가 되지 않고,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을 일반인의 능력(객관적, 추상적 과실)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특정행위자의 능력(주관적, 구체적 과실)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²⁶⁾ 현행

24) 유지청구권과 관련한 학설 중 물권적 청구권설을 따를 경우 소유자, 용익권자, 관습상의 사용자, 상된 관계에서의 보호를 받을 자 등이 청구권자가 되고, 불법행위설을 따를 경우에는 위법한 침해행위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한 자, 인격권설을 따를 경우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 환경권설에 의하면 물권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권자가 됨으로 각 학설에 따라 유지청구의 주체인 피해자가 범위가 달라진다.

25) 박운길(주 15), 204면.

26) 박운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1, 390-391면.

법상의 엄격한 해석론에 의하면 객관적 과실설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 과실설을 취함으로 전제로 諸조문의 결함이나, 위험한 동물 및 공작물의 방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등의 위험야기 요소들을 주의의무 위반의 측면에서 다루어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이 경우 과실책임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주의정도 내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무과실책임과 유사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²⁷⁾²⁸⁾

(나) 수인한도의 판단문제

1) 수인한도론 의의

환경침해관련 소송에서 유지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침해의 계속성과 더불어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²⁹⁾ 여기서 일반평균인이 통상 수인할 수 없는가 여부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그 명확한 기준과 관련한 개념적 대립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지청구는 공해소송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해로 인한 침해행위의 민사법적 구제와 관련해서는 수인한도의 개념과 환경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수인한도 개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정 및 지역성 등 제반 기타 사항들을 비교형량해서 손해가 일반평균인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위법성 판단에서 나타난다.³⁰⁾ 이와는 달리 환경권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침해행위의 모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해라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전제로, 환경에 대한 권리는 만인이 공유하는 것

27) 윤희영(주 3), 188면.

28) 한편 이 책임 요건과 관련하여, 환경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제44조 제1항이 문제되고 있다. 즉 이 규정의 적용으로 기존의 소음공해나 진동 등에 의한 공해, 일조권, 조망권 관련한 분쟁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및 이 규정의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있다. 동규정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편(주 23), 104-105 및 106-107면 참조.

29) 손운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300면.

30) 이승우, “항공기소음공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2004. 4), 한국환경법학회, 217면.

이므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³¹⁾ 그렇다면 인공조명시설·기구에서 방사되는 빛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수인한도 초과여부 판단의 기준

통상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³²⁾ 예컨대 당해 인공조명에 의한 노출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기준들을 가정해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i) 인공조명의 공공성이 과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유지나 존속에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ii) 지역주민의 피해의 정도, 피해의 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대성이 존재하는지, iii) 지역주민 희생의 공평성의 고려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공공이익의 실현이 주민의 희생의 강요로 인한 피해와의 공평성이 있는지, iv) 사전조사의 예측과 피해의 방지 및 경감조치가 충분한 것이었는지, v) 제반 피해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경감의 효과가 없었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³³⁾

이 중, 침해유인이 되는 물건이 공작물 및 영조물일 경우에는 i)의 공공성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성은 다시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의 피해가 시설물의 공익성이나 필요성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지 않을 것은 언급할 것조차 없지만, 일반적인 사인

31) 이승우, “자동차도로의 소음공해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2009. 4), 한국환경법학회, 291면.

32) 박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224면. 판례는 일조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수인한도의 판단을 위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 2. 1. (171), 320]).

33) 古崎慶長, “大阪空港抗訴審判決と國家損害賠償”, 判例時報 第797号(1975. 10), 判例時報社, 13頁 및 伊藤進, 「公害不法行為論」, 信山社, 2000, 11頁. 우리 판례의 경우도 항공기소음공해분쟁에 대한 판결에서 이 내용에서 제시하는 기준들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 4. 15. (200), 606] 참조).

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국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나 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이에는 공공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해 시설의 공공성의 성질, 내용에 따른 수인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공공성이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인한도의 한계도 상승되어야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ii)과 관련하여, 주민희생의 공공성에서는 공공적 이익과 개인피해의 관계를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따라 개인피해에 대한 평가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의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수익과 피해 사이에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타당성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³⁴⁾

한편으로, 위 요소들의 종합적인 고려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의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 대상지역 및 토지에 보호되는 생활이익의 형성여부를 판단한 후 당해 생활이익의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이어져야하고, 그런 다음 비로소 수인한도 초과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

빛공해로 인해 거주지역 환경이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및 일상생활상 여러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단지 피해의 내용, 정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침해행위의 유형이나 공익성, 피해방지경감을 위한 조치 유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인한도 초과하는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인한도론에 따라 피해의 종류, 정도와 공공성, 방지조치 등을 동일 차원에서 종합 형량하는 단순한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실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노력도 가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³⁵⁾

한편으로는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에 관한 경우와 유지청구 판단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경우에 있어 차이가 없음이 중요하다.³⁶⁾ 아울러

34) 이승우(주 31), 294면.

35)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환경권론에 따른 수인한도에 대한 접근이다. 이를 두고 수인한도론을 배척하기 위해 등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이승우(주 31), 292면 참조).

36) 伊藤 進(주 33), 11頁.

유지청구와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수인 한도 초과 판단의 결과만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3. 유지청구

유지청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써,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구제방법이다. 인공 조명시설 등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원인에 대한 배제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 원래 민사법상 토지소유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의 환경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유지청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유지청구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인데,³⁷⁾ 작위 청구는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생원의 개선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방지시설의 철거 등이 예가 되고, 부작위청구는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계의 운전금지나 시설설치의 금지, 물건폐기의 금지 그리고 악취 오수배출 등에 관한 투기 등이 예가 된다.³⁸⁾ 유지청구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크게 i) 소유권 등에 의한 물권적청구권설³⁹⁾, ii)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설⁴⁰⁾, iii) 인격권설⁴¹⁾, iv) 환경권설⁴²⁾ 등이 있다. 이들 중 종래의 다수설 판례는 물권적 청구설에 따라왔다. 그러나 환경침해의 특질이 부동산물권이나 이용권에 대한 물적 침해가 아닌 인간의 생명, 신체 그리고 환경이라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소유권 기타 물권에 기하여 권리를 구제받기보다는 자기의 건강이나 생활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 그 인정범위

37) 손윤하(주 29), 368면.

38) 손윤하(주 29), 368면.

39) 加藤一郎,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70, 438-439頁;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1992), 한국환경법학회, 29면.

40)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1083면.

41) 김홍균(주 40), 1085-1086면.

42) 伊藤進(주 33), 17頁; 권용우, 「불법행위론」, 신양사, 1998, 242면.

가 넓고 환경침해의 특질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에도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⁴³⁾ 이와 같은 이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규정 하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설을 근거로 인정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절대권인 물권의 침해가 아닌 ‘광고영업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인정한 판결⁴⁴⁾도 나오고 있어 기존의 물권적 청구권설에 의해서는 다양한 모습의 침해 유형들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⁴⁵⁾

어쨌든 작위 또는 부작위의 유지청구는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환경침해가 발생한 후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고 피해액의 산정조차도 힘들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임에는 분명하다.⁴⁶⁾ 민사법상 이와 같은 유지청구의 실정법적 근거는 민법 제214조에서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민법 제217조의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의 규정이다.⁴⁷⁾ 민법 제214조 및

43) 윤진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3집(1995), 법원도서관, 22면. 하지만 이러한 인격권의 가장 큰 비판점은 인격권이라는 개념의 채용시 그 요건이 너무나도 막연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윤철홍,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7권 제1호(2000. 6), 한국비교사법학회, 545면). 이러한 비판은 환경권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판점에 대해서는,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1호(1984. 5),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99-100면 참조.

44)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공2010하, 1855].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 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되,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광고영업이익의 침해행위’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금지(유지)청구를 인정하였다. 한편, ‘영업이익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제55호(2011. 9), 한국민사법학회, 213-216 참조.

45) 나아가 금지청구권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의 견해 중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 김상중(주 44), 239-240면.

46) 김상천(주 3), 394면.

47) 이에 대해 제217조만이 실정법상의 근거로 가장 적당함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김상천(주 3), 410-411면에서는 “민법 제217조는 단지 방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의 인정근거를 제공하는 독일 민법 제906조와는 달리 이웃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웃 거주자에게는 수인의무를 지움으로써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독자적인 청구

제217조에 의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뿐만 아니라 빛에 의한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여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또 피해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⁴⁸⁾ 나아가 청구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물권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제205조 및 제206조상의 점유자로서의 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과도한 빛의 방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소극적 방해, 적극적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⁴⁹⁾ 물론 이에 대해서는 침해 유형 중 소극적 침해 내지 관념상의 침해는 제217조가 규율하는 생활방해가 아니고,⁵⁰⁾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방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⁵¹⁾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소극적 침해와 적극적 침해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217조의 규율 대상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⁵²⁾ 뿐만 아니라 제217조 규정의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대상범위를 '토지이용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발생하는 간섭 또는 생활방해'로 본다면, 생활방해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고, '빛공해'로 인한 간섭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범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⁵³⁾

요컨대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에 의한 지나친 빛의 방사 즉 빛공해가 발생할 경우

권의 기초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 제217조와 제214조는 서로 적용대상을 달리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법 제214조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유체적인 점유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유형적인 점유침해에 대한 수인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여, 유지청구의 직접적인 근거는 제217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8)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2010. 11), 한국환경법학회, 297-298면.

49) 마찬가지로 소극적 방해와 적극적 방해 모두를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견해로는 김재형, 「한국민법이론의 발전(1) - "소유권과 환경보호"」, 박영사, 1999, 318-319면; 김상천(주 3), 410면.

50) 박윤직(주 32), 181면.

51) 김중환/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8, 299면.

52) 구별을 인정하고, 그 판단에 신중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전경운,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 민사법학 제49권 제1호(2010. 6), 한국민사법학회, 161-200면에서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시중지가처분의의】 [공1995. 10. 15. (1002), 3399]에 대한 비판으로써 이를 언급하고 있다.

53) 김상용(주 16), 340면.

이에 대한 유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은 검토한 바와 같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유지청구 자체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⁵⁴⁾ 왜냐하면 유지청구가 공해로 인한 환경과피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대규모의 공익사업과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⁵⁵⁾ 때문에 빛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에 있어서도 결국 수인한 도여부의 판단에서 그 적용가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아래에서 검토할 사후적 구제들, 즉 책임법리에 의한 배상으로는 피해자의 전보배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이상,⁵⁶⁾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지청구 인용결정 확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4.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빛의 지속적·과도한 방사행위와 같은 환경침해의 원인행위 등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요구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과 관련한 사항들은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하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빛공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침해 원인제공자의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때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해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재산적 손해는 경제적·재산적 불이익 상태를 말하고, 비재산적 손해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과 같이 비재산적 법익에 관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⁵⁷⁾ 이것을 환경침해와

54) 일본 판례에 따른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개인적 법익보다 지역성, 공공성 내지 유용성의 중시, 둘째, 환경침해시 도시생활상의 수인의 필요, 셋째, 가해자 측의 개선가능성 고려, 넷째, 공법상의 규제기준치의 허용범위 내인 경우 등의 이유에서이다(김상천(주 3), 394면).

55) 伊藤 進(주 33), 15頁.

56) Lucas Bergkamp, *Liability and environment :private and public law aspects of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in an international contex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71.

57) 박윤직(주 26), 408면.

결부시켜 말하면, 재산적 측면의 손해는 생활환경 등의 침해로 인한 주거가치의 하락, 영업상의 손실 등을 들 수 있고, 비재산적 측면에서의 손해로는 쾌적한 환경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 및 그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⁵⁸⁾ 여기서 재산적 측면의 손해는 다시 그것이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손해를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 위자료 인지 구별함으로써 소송상 소송물이나 기관력도 다르게 된다는 효과가 나타난다.⁵⁹⁾ 결국 빛공해로 인한 손해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론들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함께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여 손해를 나눌 수 있다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손해산정과 관련하여 인공조명설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구체적 증거에 따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자료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신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⁶⁰⁾ 이 경우 법관의 재량범위의 과대를 우려한다면, 재산피해액을 포함한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액수 결정의 곤란함을 고려할 때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인공조명시설·기구로 인한 빛공해에 대해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빛공해 유발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입증책임의 분배법리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즉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짐으로써, 원고는 법관에게 고도의 개성에 대한 확신 내지 의심에 침묵을 명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형성시켜야 한다.⁶¹⁾ 하지만 환경소송에서 이 정도의 입증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것은 환경소송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환경침해 사건에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주 높은 수준의 자연과학적·

58) 서해용, “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사법적 구제 - 소음·진동피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4. 8), 한국환경법학회, 203면.

59)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실무상으로는 아예 이를 모두 위자료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서해용(주 58), 203면).

60) 안경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2011. 8), 한국환경법학회, 256면.

61) 호문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496면; 민사소송에 있어 요증사실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 2141] 등 참조.

기술적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경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빛공해로 인한 피해들 중 전형적인 피해로 볼 수 있는 것들 즉, 생활방해나 수면방해 등은 그나마 경험칙으로 용이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질환과의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⁶²⁾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개연성이론과 그에 대한 수정이론으로 등장한 신개연성이론, 위험영역설 등이 그것이다.⁶³⁾ 어쨌든 우리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⁶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 학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⁶⁵⁾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침해의 특수성, 특히 빛공해나 소음공해와 같은 성격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개연성이론이나 신개연성이론의 이론을 채용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위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내용들은 빛공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⁶⁶⁾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새로운 환경침해 유형이나 손해발생에 대한 평가 시에 입법상의 근거 미비를 이유로 비판을 가하지만, 빛공해의 경우에는, 비록 공법적 측면의 규제법이기는 하지만, 그에 관한 침해를 명문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법상의 구제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공조명시설·기구의 설치로 인한 장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도 논의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판례와 관련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장애의 도로소음공해 관련 사건에서 소음방지대책의 결과, 손해의 경감, 소멸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손해액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소음공해 판결에서

62) 이와 같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으로는 주로 생활방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대부분이고 피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편(주 23), 133면).

63) 이들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전경운, “환경침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2003. 8), 한국환경법학회, 369-374면 참고.

6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손해배상】 [집22(3)민, 106;공1975. 1. 15. (504), 8214.

65) 대표적으로 곽윤직(주 26), 409면.

66) Hübner, Ulrich, *Haftungsprobleme der technischen Kontrolle*, NJW 1988, 441, 452.

는 장래의 소음공해에 관해 침해 상태 및 손해의 발생을 승계한다고 추정해 청구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현 시점에서 확정해서 긍정하였던 판결이 존재한다.⁶⁷⁾ 빛공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참조할 만한 점이라고 본다.

5.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공조명시설·기구는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⁶⁸⁾이므로 공작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조명시설·기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 제 758조 상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가해자인 국가 혹은 사인에게 물을 수 있다.⁶⁹⁾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은 환경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공작물책임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추정적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⁷⁰⁾ 예컨대, 인공조명시설·기구의 하자에 의한 환

67) 竹下守夫, “差止請求の強制執行と將來の損害賠償請求をめぐる諸問題”, 判例時報 第797号(1975. 10), 判例時報社, 33-34頁.

68) 朴윤직 편집대표(유원규 집필부분), 「민법주해(XIX)」, 박영사, 2005, 4면;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704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876면; 오시영, 「채권각칙」, 학현사, 2010, 837면 등.

69) 이 경우 손해를 끼친 가해자가 국가이든 사인이든 동일하게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공조명 시설·기구가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과 제758조 제1항은 하자의 종류나 판단기준의 해석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묻는다면이라도 법리상으로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본다. 단지 영조물책임에 있어서는 언제나 국가가 무실책임을 진다는 차이점이 있다(안경희(주 60), 260면 참고).

70) 朴윤직(주 26), 422면. 즉 공작물책임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이 가능한 점유자에게는 중간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경오염 내지 빛공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통상 공작물의 하자라는 것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 및 설비를 설치 당시부터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치 후에 불완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⁷¹⁾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시설 및 기구에 의한 빛의 방사가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위험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각종 관련 법률들에서 인정하는 허가 등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낮고, 설령 하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빛의 방사에 의한 환경침해의 위험성을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빛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제758조 제1항 상의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에 대한 전보를 받기가 상당히 불충분함을 보여준다.⁷²⁾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결과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어 공작물 책임 등을 보다 넓게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렇게 보는 견해를 ‘기능적 하자 이론’이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정설의 경우 하자의 개념을 물리적·외형적인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흠결이 없더라도 본래의 용법에 따른 이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자나 제3자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섭함으로써,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공작물 또는 영조물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이것은 수인한도와 위법성의 존재를 별개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의 태도에 반하는 것으로 수인한도 이상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하자와 함

7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 507]).

72) 김형석(주 21), 210면 참조.

게 위법성까지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⁷³⁾ 이와 달리 판례의 경우 이른바 김포공항소음사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본 판결⁷⁴⁾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능적하자 이론 도입을 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비단 소음공해뿐만 아니라 빛공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또는 공작물 및 영조물의 물리적·외형적 하자 등의 요증사실을 입증하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손해의 수인한도 초과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공작물이나 영조물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법적 규제가 원칙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명백한 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역시도 가능하여야 하므로, 수인한도론을 결부시켜 하자의 판념을 확대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⁷⁵⁾

IV. 결 론

인간은 그 자체로서의 존엄가치실현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회, 경제가 발전해나감으로써 그러

73) 안경희(주 60), 263면; 채영근,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1호(2005. 6),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42면.

7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 3. 1. (221), 301]. 이와 관련한 문헌으로 정형근, “교통공해와 영조물 책임”, 인권과 정의 제380호(2008. 4), 대한변호사협회, 144-162면 참조.

75) 손윤하(주 29), 364-265면.

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환경침해 요소들로 인해 오히려 다투고 고통 받아 왔다. 각종의 오염, 유해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환경침해의 예는 이미 너무나도 인간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문제만큼은 비교적 중요한 환경침해의 유형으로 인식해오지 못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다. 그렇지만 엄연히 빛공해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향후 규제의 대상에서 나아가 사인들간의 법적분쟁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인공조명시설이나 기구 등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민법상의 구체법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빛공해 방지법상 빛공해의 환경침해성은 분명 인정된다고 보이고, 그로 인한 침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사한 유형의 환경침해의 예들에서, 민사법적 구체법리를 크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왔으므로, 마찬가지로 이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크게 사전적 예방 및 제거수단으로써, 주로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를 둘러싼 유지청구와 관련한 기존의 법리들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적용 가능성이 분명한 결과이지만, 양 조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물권적 지위 여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 구제로써 불법행위책임 및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점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책임보다는 공작물 혹은 영조물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제758조의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환경침해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유사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지청구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 예방을 요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인 수인한도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유지청구의 인정 근거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기존의 판례나 학설의 입장을 부정하는 견해의 등장에도 숙고가 필요함을 향후 빛공해 관련 연구에서도 충분히 인

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투고일 : 2012. 3. 31.	심사일 : 2012. 4. 12.	게재확정일 : 2012. 4. 21.
----------------------	--------------------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곽윤직 편집대표(유원규 집필부분), 「민법주해(X I X)」, 박영사, 2005.
 ———, 「물권법」, 박영사, 2002.
 ———, 「채권각론」, 박영사, 2011.
 권용우, 「불법행위론」, 신양사, 1998.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8.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편, 「2011 환경소송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손운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오시영, 「채권각칙」, 학현사, 201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12.

논문

- 구재근,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2010. 4), 한국환경법학회.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제55호(2011. 9), 한국민사법학회.
 김상천, “환경침해의 유지청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1호(2010. 6), 한국재산법학회.
 김재형, 「한국민법이론의 발전(I) - “소유권과 환경보호”」, 박영사, 1999.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2011. 3),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 박운길, “유지청구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12권(1997. 1), 한국토지법학회.
-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1호(1984. 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해용, “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사법적 구제 - 소음·진동피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26권 제2호(2004. 8), 한국환경법학회.
- 안경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2011. 8), 한국환경법학회.
- 윤진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3집(1995), 법원도서관.
- 윤철홍,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7권 제1호(2000. 6), 한국비교사법학회.
- 윤효영, “환경손해의 개념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한림법학 FORUM 제20권(2009. 12),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2010. 11), 한국환경법학회.
- _____, “자동차도로의 소음공해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2009. 4), 한국환경법학회.
- _____, “항공기소음공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2004. 4), 한국환경법학회.
- 전경운,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 민사법학 제49권 제1호(2010. 6), 한국민사법학회.
- _____,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근거와 인용의무 등”, 민사법학 제42호(2008. 9), 한국민사법학회.
- _____, “환경침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2003. 8), 한국환경법학회.
- 정형근, “교통공해와 영조물책임”, 인권과 정의 제380호(2008. 4), 대한변호사협회.
- 채영근,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1호(2005. 6),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1992), 한국환경법학회.

2. 일본 및 해외문헌

大塚 直, 環境法, 有斐閣, 2006.

伊藤 進, 「公害·不法行爲論」, 信山社, 2000.

加藤一郎,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70.

古崎慶長, “大阪空港抗訴審判決と國家損害賠償”, 判例時報 第797号(1975. 10), 判例時報社.

竹下守夫, “差止請求の強制執行と將來の損害賠償請求をめぐる諸問題”, 判例時報 第797号(1975. 10), 判例時報社.

Hübner, Ulrich, *Haftungsprobleme der technischen Kontrolle*, NJW 1988, 441 ff.

Buchholz, Georg, *Integrative Grenzwerte im Umweltrecht*, Berlin, 2001.

Kohei Narisada/Duco Schreuder, *Light Pollution Handbook*, Springer, 2004.

Lucas Bergkamp, *Liability and environment :private and public law aspects of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in an international contex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loetz, Kristen M., “Light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the Inadequacies of the Common Law and State and Local Regulation”, 36 *New Eng. L. Rev.* 985 (2001–2002).

[Abstract]

The Remedies of the Private Law on the Damage for the
Light Pollution

Choi, Hyun Tae

Recently, as society develop, Legal disputes about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increasing. Nevertheless,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Prospect Right and Right to have sunlight. But researchers pay scant attention to the Legal protection of Light Pollution in Korea until now, although much has been said about the Legal protection of Light Pollution in other country. This article emerged from the question of the civil liability about Damage caused by Light pollution in civil case term, because “The Protection Law of Light Pollution caused by the scattering of artificial light” enacted by parliament in this year.

“Light pollution” is the night sky glow caused by the scattering of artificial light in the atmosphere. To prevent light pollution, an outdoor lighting fixture that exceeds a certain output may be installed, replaced, maintained, or operated using state funds only if it is a cutoff luminaire, meaning one emitting only a limited amount of light above the plane of the light.

Although legal disputes created by Light Pollution hasn't arisen so far, the disputes will take in the court since this law take effect in 2013. So far, very little has been done about this. Therefore, the article will look for what is reasonable to apply the civil law principles by reviewing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environment that dealt with noise pollution, vibration, and others.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civil litigation concerning light pollution to important material.

주 제 어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손해, 환경권, 소음공해, 조망권, 민사책임, 위법성 판단기준, 유지
청구권, 손해배상책임

Key Words Artificial Lighting, Light Pollution, Environmental Damage, Environmental Rights, Noise
Pollution, Prospect Right, Civil Liability, Judgement Criterion of Illegality, Claim for
Damage Injunction, Liability for Damage